

특별공급알선 인터넷신청 매뉴얼

【 인터넷 신청은 해당 공고의 신청일 09:00~17:00에 가능합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하단의 “내연금보기”를 클릭합니다.

재직공무원

내연금보기 (조회/신청)

- > 연금대출 신청
- > 연금대출 잔액 조회
- >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
- > 대여학자금 해외대학 신청
- > 대여학자금 잔액 조회
- > 융자추천서 발급, 잔액 조회

종합재해보상시스템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등)

신청하러가기 →




재직자 정보조회


퇴직급여 인터넷청구


퇴직급여 예상액조회


합산신청


군복무기간 신입신청


임대주택 입주신청


주택분양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시효기간(3년)내청구]


연금교육 신청조회


맞춤형복지청구


제휴복지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내민원보기


민원신청·발급


서식자료실


마음건강센터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조회/신청)

- > 월 연금 지급내역
- > 연금 과세
- > 내민원보기
- > 연락처, 계좌번호 변경
- >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정
- > 민원신청·발급

종합재해보상시스템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등)

신청하러가기 →

2021년 연금조정률 0.5% 인상

2020년 연금월액	2021년 연금월액
예) 2,000,000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전년도 연금월액을 입력하시면 당해연도 인상된 연금월액이 확인됩니다.


G시니어


연금수급자 커뮤니티


은퇴자 공동체마을


공무원연금 구독신청


공무원연금 원고투고


연금수급자 연금교육


서식자료실


제휴복지

- 1 -

3. 인증서로그인 또는 ID/비밀번호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4.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중 '주택/분양/임대' → '주택분양' → '분양신청서 작성' 클릭



5. 분양신청서 작성



참고

1. 단지 항목에서 "신청 대상 단지명"을 선택
2. 무주택서약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3. 착오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분양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하시고 "숙지하였습니다"를 선택합니다.

8. 세대원 및 부양가족 입력, 신청완료

▣ 부양가족 정보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 (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

				[+]행추가 [-]형식제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주민번호	성명	구분	부양여부
<input type="checkbox"/>	남편	123456-*****	홍길동	배우자	예
<input type="checkbox"/>	시부	965432-*****	홍상직	세대원	아니요

세대원 및 부양가족 정보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형, 처제, 형부 등), 동거인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여 주세요.
- 본인의 직계존속: 신청 공무원 본인의 부모, 신청 공무원 본인의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 직계비속: 신청 공무원 본인의 자녀

※ 부양가족 인정 기준(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앞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조건 추가
- 30세 미만 직계비속(기혼자인 직계비속 제외)
-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기혼자인 직계비속은 제외)

[저장] [접수확인] [신청서출력] [취소]

참고

1.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필히 '부양가족정보'에 행추가하여 입력하고 부양여부는 '아니요'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세대원의 범위

세대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세대원이 있는 경우 "행추가"를 클릭한 다음 세대원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세대원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여부를 "예"로 선택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공단의 청약자격 확인결과 세대원 누락 등 입력사항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신청공무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2)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공무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3) 신청공무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4.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접수확인 및 신청서출력은 저장 후 가능합니다.

6. “저장(신청접수)”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7. “저장(신청접수)”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저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분양신청서 작성 화면을 나가신 경우, 다시 접속하시어 단지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저장”후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입력사항 및 점수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